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안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(‘24.12.23.)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‘25.4.22.)에 따른 후속조치
 - *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(부총리 주재, 관계부처 합동)

◇ 주요내용

가. 일괄입찰의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기준 마련(안 제10조의10)

- 실시설계 적격통지 이후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변경된 물가를 고려하도록 추가하여 규정
- * (현행) 물량, 자재비, 노무비,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→
(개정) 물량, 자재비, 노무비, 장비조합, 작업 여건 및 물가

나. 일괄입찰의 가격협상 절차 추가 규정(안 제10조의11)

- 일괄입찰(턴키)의 가격협상시 기존 예산으로는 협상이 곤란한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